

#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581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24.

발의자 : 강준현 · 송재호 · 홍성국  
박상혁 · 김태년 · 이성만  
김종민 · 기동민 · 강득구  
홍영표 · 고용진 · 서영석  
신정훈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·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, 2020년 9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.

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대규

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2023”을 “203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3”을 “203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 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 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 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 할 수 있다. ④ · ⑤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